

한국철강협회 공고 제2019-4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 91조 제 7항 및 수출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9-29호) 제5조에 의하여 한국철강협회는 對美 및 對EU 철강품목에 대한 수출승인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2. 27
한국철강협회장

對美 및 對EU 철강재 수출업무 승인 요령 공고

제 1 조 【목 적】

이 업무처리요령은 對美 및 對EU 철강품목의 수출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 91조 제 7항 및 수출입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9-29호) 제 5조에 따른 그 업무 처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업무처리요령은 [별표 1]에 계기된 철강품목의 對美 및 對EU 수출에 적용한다.

제 3 조 【승인신청절차】

① 이 요령에 의하여 수출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한 수출승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수출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한-미 및 한-EU FTA 원산지 증명서(C/O) 또는 원산지포괄확인서 1부
2. 포장명세서(패킹리스트, P/L) 1부
3. 인보이스(Invoice) 1부
4. 선하증권(B/L) 1부

* 단, 선하증권의 경우 수출신고 후 발급 가능하므로 추후 보완서류로 제출

5. 신청제품 및 소재(HS7206~7306)의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각 1부.
6.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1부

- ② 제1항의 수출승인신청서는 [별지 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관세청의 관리시스템에 의거, 1개의 HSK(10단위) 당 1부의 수출승인 신청서를 작성
- ③ 승인기관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는 수출자의 신청서류 접수 후 다음을 확인 후 신청서를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별지 1]의 신청서 내 (1)~(13)번 항목 기입 확인
 2. 신청서에 명기된 신청 물량과 수출서류 상 물량 일치 확인
 3. 신청서에 명기된 수출자, 구매자 정보와 수출서류 상 정보 일치 확인
 4. 신청서에 명기된 출발, 도착항 정보와 수출서류 상 정보 일치 확인
 5. 신청서에 명기된 HS 부호와 한-미 및 한-EU FTA 원산지 증명서 상 부호 일치 확인
 6. 필수 첨부 서류(제 3조 1항) 내용 확인 등
 7. 위 내용 확인에 따라 이상이 없을 경우 신청서 발급
- ④ 다음의 경우 담당자는 수출승인신청 사항에 대한 신청 각하, 기각,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
1. 신청 기간 내 신청서 및 수출서류 6종 중 선하증권을 제외한 서류 한 가지 이상 미제출 시 신청 각하
 2. [별지 1]의 신청서 상 신청자 기재 항목 (1)~(13) 중 협회 담당자 측에 별도 소명 없이 미 기재 시 신청 각하
 3. 쿼터보유량이 부족할 경우 신청 기각
 4. 신청업체 또는 해당 제조업체의 잔여쿼터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 기각 가능
 5. 협회 담당자에 별도 소명 없이 신청서에 명기된 정보와 수출서류 상 정보가 상이한 경우 신청 기각
 6. 그 밖에 협회장이 원활한 쿼터 운영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기각 또는 보완 요청 가능
 7. 위의 사유들로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협회는 신청자 측에 서류 및 소명자료 등 보완 요청

제 4 조 【승인기준 등】

- ① 본 요령에 의한 승인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연간 품목별 쿼터 물량과 업체별 쿼터 물량 한도 이내
 2. 분기별 쿼터(연간 쿼터의 30%) 물량 한도 이내 (對美 수출에 한함)
 3. 기타 쿼터 한도 관리(미 HTSUS 및 EU CN / TARIC 코드 기준)는 “對美 및 對EU 철강수출 쿼터관리 지침”에 따른다.
- ② 對美 및 對EU 철강수출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승인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 5 조 【수출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등】

수출승인 사항의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항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 6 조 【수출승인의 처리기간】

수출승인의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서류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사후관리】

- ① 수출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의 이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세법 제 251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신고필증 사본 및 선하증권 각 1부를 수출이행 후 10일 이내에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승인이행사항을 확인한 협회의 장은 이 요령 및 관계법령의 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협회의 장은 이 요령에 의해 수출승인 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수출한 자에 대하여 수출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 ④ 협회의 장은 수출승인 실적을 당해연도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수수료】

이 요령에 의하여 수출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협회 “對美 및 對EU 철강수출 쿼터관리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는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 시행한다.

[별 표 1] 철강협회 수출승인 대상 품목

H S	품 목	수 출 요 령
7206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제7203호의 철은 제외한다) 10 잉곳(ingot) 90 기 타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7207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 11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폭이 두께의 두 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12 그 밖의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 19 기타 2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25 이상인 것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7208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10 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고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25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26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27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36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37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38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39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40 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H S	품 목	수 출 요 령
7209	51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2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53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54 기타 90 기타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7209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냉간 압연(냉간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15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인 것 16 두께가 1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미만인 것 17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18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25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인 것 26 두께가 1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미만인 것 27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28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90 기타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721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H S	품 목	수 출 요 령
	11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12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20 납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합석 판을 포함한다) 30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1 물결 모양의 것 49 기타 50 산화크로뮴이나 크로뮴과 산화크로 뮴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61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69 기타 70 페인팅한 것·바니시한 것·플라스틱 을 도포한 것 90 기타	<p>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p>
7211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 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 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13 4면을 압연한 것이나 크로스드박스 패스(closed box pass)로 한 것(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4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코일 모양인 것과 부조(浮彫)된 무 너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14 기타(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9 기타 23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 의 0.25 미만인 것 29 기타 90 기타	<p>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p> <p>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p>
7212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 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클 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 한다]	

H S	품 목	수 출 요 령
	10 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20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30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0 페인팅한 것·바니시한 것·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50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60 클래드(clad)한 것	<p>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p> <p>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p>
7213	철이나 비합금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20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91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4 밀리미터 미만인 것 99 기타	<p>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p>
7214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단조(鍛造)·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열간(熱間)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한다]	

H S	품 목	수 출 요 령
10	단조(鍛造)한 것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2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틱니 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	
30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91	황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99	기타	
7215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0	쾌삭강(快削鋼)의 것[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0	기타[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	기타	
7216	철이나 비합금강의 형강(形鋼)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0	유(U)형강·아이(I)형강·에이치(H)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21	엘(L)형강	
22	티(T)형강	
31	유(U)형강	
32	아이(I)형강	
33	에이치(H)형강	

H S	품 목	수 출 요 령
40	엘(L)형강이나 티(T)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50	그 밖의 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1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만든 것	
69	기타	
91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한 것	
99	기타	
7217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	
10	도금하거나 도포하지 않은 것(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20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30	그 밖의 비금속(非金屬)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90	기타	
7218	스테인리스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	
10	잉곳(ingot)과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91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99	기타	
7219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H S	품 목	수 출 요 령
11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p data-bbox="879 327 1439 450">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p> <p data-bbox="879 595 1439 719">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p> <p data-bbox="879 999 1439 1122">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p> <p data-bbox="879 1626 1439 1749">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p>
12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13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14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21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22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23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24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31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32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33	두께가 1밀리미터를 초과 3밀리미터 미만인 것	
34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35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90	기타	
7220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11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12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20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90	기타	
7221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H S	품 목	수 출 요 령
00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7222	스테인리스강의 그 밖의 봉과 스테인리스강의 형강(形鋼)	
11	횡단면이 원형인 것	
19	기타	
20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30	그 밖의 봉	
40	형강(形鋼)	
7223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00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7224	그 밖의 합금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그 밖의 합금강의 반제품	
10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90	기타	
7225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1	방향성(方向性)인 것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9	기타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30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H S	품 목	수 출 요 령
40	기타[코일 모양은 제외하고,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50	기타[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1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92	그 밖의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99	기타	
7226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11	방향성(方向性)인 것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9	기타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20	고속도강의 것	
91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92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99	기타	
7227	그 밖의 합금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10	고속도강의 것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20	실리코망간강의 것	
90	기타	
7228	그 밖의 합금강의 그 밖의 봉, 그 밖의 합금강의 형강(形鋼), 합금강이나 비합금강의 중공(中空)드릴봉	

H S	품 목	수 출 요 령
10 20 30 40 50 60 70 80	<p>고속도강의 봉</p> <p>실리코망간강의 봉</p> <p>그 밖의 봉[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p> <p>그 밖의 봉[단조(鍛造)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p> <p>그 밖의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p> <p>그 밖의 봉</p> <p>형강(形鋼)</p> <p>중공(中空)드릴봉</p>	<p>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p>
7229 20 90	<p>그 밖의 합금강의 선(線)</p> <p>실리코망간강의 것</p> <p>기타</p>	<p>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p>
7301 10 20 7302	<p>철강으로 만든 널말뚝(sheet piling)(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조립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용접된 형강(形鋼)</p> <p>널말뚝(sheet piling)</p> <p>형강(形鋼)</p> <p>철강으로 만든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레일(rail)·체크레일(check-rail)과 랙레일(rack rail)·스위치 블레이드(switch blade)·교차구류(crossing frog)·전철봉(point rod)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받침목(크로스 타이)·이음매판(fish-plate)·좌철(座鐵)·좌철(座鐵)뼈기·밑판(sole plate)(베이스플레이트)·레일클립·받침판(bedplate)·격재(tie)와 레일의 접속이나 고착에 전용되는 그 밖의 재료로 한정한다]</p>	<p>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p>

H S	품 목	수 출 요 령
10 30 40 90	레일(rail) 스위치 블레이드(switch blade) · 교차구류(crossing frog) · 전철봉(point rod)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 이음매판(fish-plate)과 받침판(sole plate) 기타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7304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	
11 19 22 23 24 29 31 39 41 49 51 59 9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기타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드릴파이프 그 밖의 드릴파이프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기타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冷間換원)한 것 기타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冷間換원)한 것 기타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冷間換원)한 것 기타 기타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H S	품 목	수 출 요 령
7305	<p>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예: 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지름이 406.4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p> <p>11 세로 방향으로 서브머지드아크(submerged arc) 용접한 것</p> <p>12 기타(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p> <p>19 기타</p> <p>20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p> <p>31 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p> <p>39 기타</p> <p>90 기타</p>	<p>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p>
7306	<p>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예: 오픈심(open seam)·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p>	

H S	품 목	수 출 요 령
11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9	기타	
21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29	기타	
3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철이나 비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1	횡단면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인 것	
69	그 밖의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	
90	기타	

[별 지 1]

對美 수출승인(신청)서 Export License (Application)

처리기간(Handling Time) : 3 days

(1) 수출자 (Exporter)	무역업고유번호(Notification No.)	(2) 구매자 또는 계약당사자 (Buyer or Principal of Contract)		
상호 주소, 성명(Address, Name of Rep.)	상호 주소, 성명(Address, Name of Rep.)			
(3) 신용장 또는 계약서 번호 (L/C or Contract No.)		(5) 결제기간(Period of Payment)		
(4) 제 조 자 (Producer)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No.)			
상호 주소, 성명(Address, Name of Rep.)	상호 주소, 성명(Address, Name of Rep.)	(8) 출발, 도착항(Port / Airport of departure & Arrival) (출발항구 / 공항) (도착항구 / 공항) (출항 예정일) (도착 예정일)		
(7) 원산지-Origin * 제품검사성적서 필수 첨부 * 소재 검사성적서 필수 첨부				
(9) 품목번호 및 품명(Article No. & Name) (HSK)		(11) 단가 (Unit Price)	(12) 금액 (0.00) (Amount)	
(13) HS부호 (HS Code-HTSUS) : * 수출승인서 1부당 1개 HSK 코드만 신청 가능				
(14) 승인번호(Approval No.)				
(15) 승인기관기재란				
(16) 유효기간 (Period of Approval)				
위의 내용과 같이 귀사에서 신청한 철강 물량에 대한 對EU 수출을 승인함				
Korea Iron & Steel Association (Stamping)				

對EU 수출승인(신청서) Export License (Application)

처리기간(Handling Time) : 3 days

(1) 수출자 (Exporter)	무역업고유번호(Notification No.)	(2) 구매자 또는 계약당사자 (Buyer or Principal of Contract)	
상호 주소, 성명(Address, Name of Rep.)	상호 주소, 성명(Address, Name of Rep.)	상호 주소, 성명(Address, Name of Rep.)	
(3) 신용장 또는 계약서 번호 (L/C or Contract No.)	(2) 구매자 또는 계약당사자 (Buyer or Principal of Contract)		
(4) 제조자 (Producer)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No.)	(5) 결제기간(Period of Payment)	
상호 주소, 성명(Address, Name of Rep.)	(6) 가격조건(Terms of Price)		
(7) 원산지(Origin) * 제품검사성적서 필수 첨부 * 소재 검사성적서 필수 첨부	(8) 출발, 도착항(Port / Airport of departure & Arrival) (출발항구 / 공항) (도착항구 / 공항) (출항 예정일) (도착 예정일)		
(9) 품목번호 및 품명(Article No. & Name) (HSK)	(10) 수량(Kg) (Quantity)	(11) 단가 (Unit Price)	(12) 금액 (0.00) (Amount)
(13) HS부호 (HS Code - EU) : * 수출승인서 1부당 1개 HSk 코드만 신청 가능			
(14) 승인번호(Approval No.)			
(15) 승인기관기재란			
(16) 유효기간 (Period of Approval)			
위의 내용과 같이 귀사에서 신청한 철강 물량에 대한 對EU 수출을 승인함			
Korea Iron & Steel Association (Stamping)			